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05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정일영·복기왕·강준현

허성무 • 박희승 • 박상혁

허종식 • 한민수 • 박정현

이기헌 · 노종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0항 신

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 중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육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비의 특별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0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u>제3항까지</u> 의 규	⑤제3항까지 및 제
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	10 ষ্ট্ৰ
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	
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	
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u>제3항까지 및</u>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u>제10항</u>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⑥ 제1항부터 <u>제4항까지</u> 의 규	⑥제4항까지 및 제
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	<u>10항</u>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① 제1항부터 <u>제9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⑪ (생 략)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 학전 아동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보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육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① (현행 제11항과 같음)